

임웅찬 변호사

행정법 집중정리강의

- 기본이론정리 및 실전사례풀이를 위한 행정법강의
- 초학자들이 행정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계획된 강의
- 행정법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바로 2차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는 강의

■ 강의일정 2021년 4/24(토) ~ 5/14(금), 저녁, 월~토 강의, 총 18 회
저녁 6:30 ~ 10:00

■ 교 재 신행정법 특강(홍정선 저, 제20판, 박영사)
+ 각자 교재

■ 강의특징 I. 강의내용 및 특징

1. 행정법은 실체법과 절차법, 총론과 각론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 법학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행정법에 접근할 수 있다. 비법대 전공자 등 행정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자는 행정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본 강의는 초학자들이 행정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계획된 강의다.
2. 이러한 행정법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바로 2차 사례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단원이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례풀이까지 강의한다.

■ 강의특징 II. 행정법 공부방법

1. 행정법에 대한 이해

행정법을 보면, 여러 파트가 일관성이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총론과 각론, 소송법이 한꺼번에 있고, 불법행위와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큰 틀에서 행정법이지만 각 파트마다 이념이나 법리가 달리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행정법은 개별적인 파트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합하여 저변에 흐르는 법리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사례형 문제에서 어떤 체계를 갖고 어떤 내용으로 서술해 나가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있다.

행정법은 행정작용 파트와 행정구제 파트가 조금씩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술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구성요건적 효력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원에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법원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즉 각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문제로 소송법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해당한다).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도 마찬가지이다. 부관의 허용성 등 실체법적인 쟁점들 외에 이러한 부관판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부관만 위법성이 있을 때 법원이 부관만 따로 떼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송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법은 개별적으로 분해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공부방법

행정법은 여러 법학 과목 중에서도 쉽지 않은 과목이다. 다만, 수험생에게는 배점도 높고 공부할 내용도 많은 다른 과목에 집중하다보니 행정법이 뒷전에 밀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본 강의는 이러한 수험생을 위하여 기본 법리를 살펴보고, 시험과의 연계성을 살펴봄으로써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에게 유익한 강의를 되도록 하겠다.

이러한 행정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답안지에서 바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법리 외에 사례형 문제나, 판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례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해설을 살피기 전에 쟁점을 잡고, 답안지에 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결은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위주로 하되, ①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②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살펴, 각 주장을 정리한 후, ③대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 ■ 강의특징 Ⅲ. 진도

수험생들은 개별 쟁점에 대하여 공부하다가 보면 전반적인 흐름을 놓치기 쉽다.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행정법 수험서는 단편적인 이론 설명에 집중할 뿐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수험생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 저술 책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러한 수험생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진도는 홍정선 교수 신행정법특강을 교재로 하되, 강사가 정리한 자료를 배부할 예정이다. 각 진도별로 기출문제 사례(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법원행시, 입법고시)를 살펴보면서 각 범위에 대한 행정법의 기본이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시험과의 연계성을 갖고 강의를 계획하였다.

진도별 강의내용

회 차	일 시	강 의 진 도
■ 제 1 회	4/24(토)	행정법 일반, 통치행위, 법률유보의 원칙, <u>행정법의 법원(행정의 일반원칙)</u> , 사법규정의 행정법관계 유추적용의 문제, 행정법 관계 서론
■ 제 2 회	4/26(월)	개인적 공권 및 공의무, 행정법관계에서 공법상 사건 등,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민원, <u>사인의 공법행위로 신고,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의 문제.</u> 행정입법으로 <u>법규명령, 행정규칙의 비교</u>
■ 제 3 회	4/27(화)	행정입법형식으로 법규명령, 행정규칙, <u>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문제</u> , 행정계획의 절차와 그에 대한 통제, 행정행위 개관, <u>기속행위와 재량행위</u>
■ 제 4 회	4/28(수)	명령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형성적 행정행위(특허, 인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u>행정행위의 적법요건,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 -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u>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 <u>행정행위의 하자 -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u> <u>행정행위에서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제</u>
■ 제 5 회	4/29(목)	<u>하지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전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부관(종류, 적법성, 직권폐지,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가능성), 공법상 계약,</u> 행정지도(법적 근거와 한계, 권리보호제도)
■ 제 6 회	4/30(금)	행정절차법(처분의 이유제시, 당사자등의 권리로서 사전통지제도, 의견제출권 및 청문권), <u>절차상 하자 및 그 치유,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판결의 기속력,</u> 행정정보(정보의 자기결정권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청구권)
■ 제 7 회	5/1(토)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에 대한 과태료 처분, <u>대집행,</u>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행정조사, 기타(과징금, 가산세,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공표, 시정명령)
■ 제 8 회	5/3(월)	국가배상법 일반,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효과(이중배상금지규정,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구상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이중배상금지의 제한),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 배상책임자(사무귀속주체, 비용부담자, 공무원 개인), 영조물(공물-자연공물의 경우)의 하자, 손실보상제도 일반, 손실보상의 요건, 손실보상의 기준과 그 내용
■ 제 9 회	5/4(화)	손실보상의 절차(토지보상법 규정 개관-협의,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과 보상금 증감 소송),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비재산적 손실, 간접손실 등), 행정심판법(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 고지제도,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의 재결 및 그 효력)
■ 제 10 회	5/5(수)	행정소송법 일반,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소송물,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으로 처분(처분의 성립요건, 거부처분의 문제, 재결에 대한 소송), 행정소송의 관할, 원고 적격과 원고 적격의 확대(경쟁자 소송, 경원자 소송, 인근주민 소송)
■ 제 11 회	5/6(목)	피고 적격, 소송참가, 제소기간(90일/1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 권리보호이익, 가구제제도(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의 심리(변론주의의 적용, 입증책임의 문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진도별 강의내용

회 차	일 시	강 의 진 도
■ 제 12 회	5/7(금)	판결의 종류(사정판결), 판결의 효력(지박력, 확정력, 형성력, 기속력), 무효등 확인소송(확인소송과 보충성의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 소송(당사자 소송의 종류, 당사자소송의 당사자)
■ 제 13 회	5/8(토)	행정조직법(권한의 대리위임, 내부위임, 재위임,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 공법상 사단, 재단, 영조물법인, 지방자치법 일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감사청구권)와 의무
■ 제 14 회	5/10(월)	지방의회 구성, 운영, 그 권한의 범위(입법, 재정, 통제), 조례(조례의 제정, 조례의 제정사항,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조례제정권의 한계), 조례에 대한 통제(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지방자치단체 장, 그 권한(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규칙제정권), 보조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비용부담 및 손해배상책임, 지방의회의 관여 가능성))
■ 제 15 회	5/11(화)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사전적 수단, 사후적 수단-이의제도와 시정명령),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직무이행명령), 공무원의 임용(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 공무원법 관계의 변경(승진, 강임, 전직, 전보, 복직), 직위해제. 공무원관계의 소멸(당연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공무원의 권리(연금청구권), 공무원의 의무-성실의무, 복종의무 등), 공무원의 책임(징계 종류, 절차, 불복), 변상책임
■ 제 16 회	5/12(수)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일반, 표준처분(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확인 등), 경찰법상 일반수권의 문제, 경찰책임(행위책임, 상태책임, 제3자의 책임, 책임의 승계), 경찰상 즉시강제, 강제조사, 공물의 성립(공용지정), 공물의 폐지(공용폐지), 공물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의 한계(시효취득, 강제집행), 공물의 관리
■ 제 17 회	5/13(목)	공물의 사용관계(자유사용과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 허가사용, 특허사용), 영조물법, 공기업법. 특허기업, 인적공용부담(부담금), 물적공용부담(공용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공용수용(공용수용 당사자, 목적물, 사업의 준비), 공용수용절차(사업의 인정,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협의, 재결, 재결에 대한 불복), 공용수용의 효과
■ 제 18 회	5/14(금)	매권(환매권의 성질,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가격의 공시(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의 공시), 보조금(보조금의 반환), 국유 재산, 환경행정법(환경영향평가, 권리보호)